

# 독일의 2013년 보육제도 동향

## 1. 서론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연방 정부와 주(州)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가족정책을 다양하게 펴고 있고, 영아와 유아, 14살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지원, 등교 전과 방과 후에 아이들을 맡아 줄 수 있는 학교시설을 주(州)정부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맡길 곳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영아와 유아를 직업적으로 맡아 돌보는 직업적 보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모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인력을 위한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그 수가 아직은 미미하여 충분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특히,

최근 독일의 각 정당에서 크게 논의가 되고 있는 대상은 어린이 보육지원금 (Kinderbetreuungsgeld)이다. 그 밖에 독일만의 국가적인 제도라고는 볼 수 없지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외국의 학생들을 직접 부모가 선정하여 오페어 (Au-Pair)라는 제도를 통하여 1년간 체류허가를 인정하여 주고,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 초대한 가족으로부터 주거와 어학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게 되고, 이외에 약간의 용돈을 받게 된다. 일하는 부모 또는 영아를 돌보아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에 외국어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독일 내에서는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다만, 어떠한 학생을 구할 수 있는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좋은 성과가 나기도 하고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우선 독일의 보육시설과 보육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적근거<sup>1)</sup>에 대하여 세 부적으로 알아보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영아와 유아의 지원정책을 살펴본 후, 이러한 법

1) 기타 독일 영유아 보육법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유수연, “독일의 영유아 보육법제”, 『최신의국법제정보』 2012년 제6호, 법제연구원 참조.

과 제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독일의 보육시설의 종류와 각각의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본 후 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모습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독일에서 큰 논쟁이 되고 있는 어린이지원법에 의한 만 3세 이하의 영·유아 탁아소와 보육지원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II. 영·유아 지원 법제

### 1. 개관

독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아와 유아 그리고 어린이 지원정책에 대하여 살펴봄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다만, 교육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연방정부의 관할 사항이 아니라 주(主)정부의 관할 사항이므로 주(州)에서 입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연방법에서 구체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2013년 2월 연방 대통령이 보육지원금에 관한 법에 서명하여 2013년 8월부터 효력이 발생되었고, 2014년 8월부터는 지원을 확대 할 예정이다. 그 밖에 연방법에서 다루고 있는 어린이 지원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재정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예를 들

어, 2007년 12월 시행된 “탁아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재산에 관한 법(Kinderbetreuungsförderungsgesetz)”<sup>2)</sup> 이라든지,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어린이 전일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연방의 재정지원에 관한 법(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der Tagesbetreuung für Kinder)”<sup>3)</sup>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확보를 위한 건설계획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법 등 재정지원과 관련된 법은 연방법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영·유아 보육제도 및 어린이 지원 방법 등의 내용은 주(州)법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본 글에서 독일 16개 주의 내용을 모두 살펴볼 수 없고, 각 주의 특수성이 감안된다고 하더라도 각 주(州)법의 내용이 크게 상이하지 않으므로, 본 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거나, 신문에 기사화 된 주(州)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운영 실태에 관한 내용은 헤센주의 내용임을 밝혀둔다.

#### 1) 어린이지원법(Kinderförderungs-gesetz : KiföG)<sup>4)</sup>

어린이지원법(KiföG)은 어린이를 돌보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 법은 2008년 12월 16일에 입법되어 질적으로 인정된 육아보호시

2)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kbfg/gesamt.pdf> 원문 참조.

3)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kitafohg/gesamt.pdf> 원문 참조.

4) 2010년 7월 13일 화요일, 가족부 (노인, 가족, 여성, 청소년 부) <http://www.bmfsfj.de/BMFSFJ/gesetze,did=133282.html>.

설을 확충하고, 부모들에게 이러한 육아시설의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각 주(州)에 의하여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므로 여전히 법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보는 주(州)들도 많이 있다. 그 이유로는 어린이 보육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직업교육을 받은 질적으로 인정된 선생님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연방차원과 주차원에서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6월 13일까지 의무적으로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둘째, 이러한 보육원의 건설이 완료된 후 2013년 8월 1일부터 1세에서 3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자리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집행을 위하여 본문 첫 부분에 언급된 “탁아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재산에 관한 법”이 근거법률로 존재한다. 총 백이십억 유로가 어린이 보육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집행되어진다.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십억 유로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사십억 중 이억 천오백만 유로는 연방 정부 출자금액으로 2013년까지 충당하기로 하였다.

## 2) 보육지원금에 관한 법률(Betreuungsgeldgesetz)

본 법률은 오스트리아에서 어린이 보육지원금법(Kinderbetreuungsgesetz)라는 이름으로 이미 2001년 시행되고 있고, 독일에서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부모지원 및 시간에 관한 법(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sup>5)</sup>의 내용과 사회보장법(Sozialgesetzbuch)의 생계부조금의 내용이 보육지원금에 관한 법률(Betreuungsgeldgesetz)로 통합 수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2~3세의 어린이를 보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순히 공적으로 요구되는 탁아시설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아와 유아의 교육에 있어서 가족의 자유권을 확대하고 가족의 재정적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함에 있다. 본 법은 기존의 연방 부모지원금과 부모시간에 관한 법 등 7개의 법을 종합적으로 수정한 법으로 근본적으로 많은 내용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육지원법은 크게 부모지원금(Elterngeld), 생계부조금(Pflegegeld), 어린이보육지원금(Betreuungsgeld für Kinder)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부모지원금은 자녀 출산으로 수입에 손해를 보게 된 부모의 재정을 보완해 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해석된다. 본 법은 2013년 2월 18일 연방 대통령이 승인하여 2013년 8

5)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beeg/gesamt.pdf>.

월 1일부터 연방법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본문 도입부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에 교육에 관한 입법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함부르크 주에 의하여 본 연방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문제 이외에도 보육지원금의 경우 3세 이하의 자녀를 기타 교육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에 지원되는 급부이므로 출산이후 직장에 복직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또 다시 양육에 관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결과가 야기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3) 연방 자녀지원금법(Bundeskindergeldgesetz: BKGG)<sup>6)</sup>

연방 자녀지원금법은 1995년에 입법되어 2009년과 2011년 두 번의 개정작업이 있었다. 자녀지원금법은 총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서 우선적으로 자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해당 하는 사람은 조세법적으로 제한된 세금을 내지 않고, 독일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거주지가 독일인 경우의 사람,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히,

직업을 가지고 독일에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1조의 법률 조건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자녀지원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제2조에서는 본 법에서 말하는 자녀의 개념, 제3조 다른 청구권과 경합하는 경우 그 조정요건, 제4조 자녀지원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금전적 급부내용, 제5조 청구의 개시와 종료, 제6조는 자녀지원금의 액수, 제6a조 사회보장법에 따른 자녀수당, 제7조 관할, 제7a조 개인정보의 전달, 제8조 비용, 제9조 신청방법, 제10조 정보제공의무, 제11조 지급, 제12조 상계, 제13조 관할지, 제14조 결정, 제15조 법적구제수단, 제16조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이하 제22조는 보칙 및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각 조문과 관련하여 자녀지원금법에서 다루고 있는 법의 주요한 내용들은 이하 재정적 지원형태의 자녀지원금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 2. 재정적 지원형태

### 1) 보육지원금(Betreuungsgeld)

법적 근거에서 살펴보면, 보육지원금은 3세 이하의 영·유아를 탁아시설에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영·유아 지원

6)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bkkg\\_1996/gesamt.pdf](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bkkg_1996/gesamt.pdf) 원문 참조. 자세한 법의 시행에 관한 내용은 이하 독일 노동청에서 발간한 연방 자녀지원금법에 관한 실행지침을 참고. <http://www.arbeitsagentur.de/zentraler-Content/A09-Kindergeld/A091-steuerrechtliche-Leistungen/Publikation/pdf/DA-Famka-Bundeskindergeldgesetz.pdf>.

금을 말한다. 부모가 3세 이하의 자녀를 탁아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부모가 아이들을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 또는 국가가 탁아비용을 지불하는 곳 중에서 몇 명의 영아와 유아를 모아서 가정집에서 보육하는 곳(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집에서 놀이방을 운영하는 형태)으로 3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맡기는 부모에게 매달 100유로 정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100유로로 책정된 지원금은 2014년부터 150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독일의 경우 일하는 부모가 3세 이하의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탁아소가 많지 않으므로 탁아소의 자리를 배정받지 못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 2) 자녀지원금(Kindergeld)

자녀지원금이 다른 지원금과 다른 점은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정의 소득과 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지원금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첫째와 둘째 자녀의 경우 매달 184유로가 지급되며, 셋째의 경우 190유로, 넷째와 그 이후의 자녀들은 매달 215유로씩을 받게 된다.

자녀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18세까지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주어지는 금전적 급부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일정한 조건 하에 있는 자녀

의 경우, 즉 직업이 없는 자녀의 경우 21세까지 또는 직업교육 중에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25세까지도 자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을 위한 자리가 없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에 준하여 25세까지 지원된다. 자녀가 첫 직업교육 후 또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주 20시간 이하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듯 자녀지원금은 자녀의 직업과 부모의 수입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신청을 노동청의 가족회계과에서 접수 한다.

2011년 1월부터 자녀가 국제 자원복무, 연방 자원복무를 마친 경우에도 소급적으로 자녀지원금에 대한 신청 권리가 주어진다. 다만 자녀지원금의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의 보호아래에 있는 경우, 즉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부와 모 중에 누가 자녀지원금을 수령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부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에도 재산을 각자 관리하거나 각자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고 세금의 등급도 다른 것을 감안한다면, 누가 자녀지원금을 받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타 자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노동청 가족회계과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sup>7)</sup>

7) 기타 자녀수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 가족부의 서비스센터 Serviceportal "Familienwegweiser" des Bundesfamilienministeriums에서 찾아볼 수 있다.

### 3) 무상의 의료보험제도

그 밖에도 영아와 유아, 어린이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부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그의 자녀들은 추가 보험금의 납부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경우 및 자녀가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될 때까지 부모가 자녀의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은 추가적으로 들지 않는 것이다. 독일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3. 보육시설의 종류 및 현황

독일의 경우 영아와 유아,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설의 명칭이 각 주와 각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다. 다만, 나이를 기준으로 3세 이하의 경우와 4세에서 6세까지를 기준으로 나누고, 6세 이상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된다. 물론 5세의 아이의 경우 부모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심사과정을 통하여 조기에 입학이 허락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적이나 기타 학교 적응 능력에 따라 입학 시기를 늦추는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영아와 유아의 보육 시설과 유치원, 초등학교생들이 수업 전과 후에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의 종류와 운영모습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독일의 경우 각 지역마다 전일제 탁아소(Kindertagesstätte)의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다만 탁아소(Kinderkrippe 또는 Großtagespflege)는 3세까지의 어린이를 돌보는 곳이고, 앞에서 살펴본 유치원의 경우는 3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를 교육하는 곳이다. 부분적으로 전일제 유치원(Ganztagskindergärten)이 전일제 어린이 집(Kindertagesstätte)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린이를 위한 시설들이 모두 연령별로 3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어린이 탁아소(Kinderkrippe), 유치원(Kindergarten), 놀이·공부방(Hort)으로 나뉜다. 다만, 이러한 3가지 그룹을 통칭하여 전일제 탁아소(Kindertagesstätte)라고 부르기도 하므로 용어상의 혼돈이 있을 수 있다. 이하의 내용도 개념적으로 연령그룹별로 나누어 각각의 시설들을 설명하였다. 전일 탁아소에 포함되는 3가지 형태의 시설 이외에 가정집에서 아이들을 맡아 돌보아 주는 부모(Tagespflege)제도가 어린이방(Kindertagesbetreuung)의 한 종류에 속한다.

#### 1) 영·유아 탁아소(Krippe)

현재 독일에서 KiföG 법의 시행과 더불어 가장 크게 확보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만 3세 이하의 영아와 유아를 위탁받는 곳이다. 현재 이러한 탁아소의 수가 독일 내에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곳의 자리를 배정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독일에서 2013년 8월부터 모든 부모들이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아직까지 보육시설의 자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법의 실행과는 달리 마땅한 보육시설의 자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법 시행 이후에 3세 이하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의 자리를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적 대응이 쉬운 일도 아니며, 이를 위한 근거 제출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도 시간을 많이 요구되는 일이므로, 출근을 앞둔 부모에게 이러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영·유아를 위한 자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 이미 아이가 태어나기 전 최소 3개월이나 6개월 전부터 부모들이 자리를 예약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배정받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사정이 급한 경우에는 사설 시설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설 보육시설의 경우 그 비용이 국가지원 보육시설의 5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보육수당(Betreuungsgeld für Kinder)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되는 부분인데, 일하지 않는 부모가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 받게 되는 육아 수당이 늘어나는 경우, 이러한 육아수당을 받는 일하지 않는 부모가 국가 지

원의 육아시설이 아닌, 다른 유사한 시설에 아이들을 위탁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참사원과 지방참사원은 2013년 2월 말에 육아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심도 있게 고찰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요구되는 육아 보육시설의 자리는 총 356,000개인 반면 현재 존재하는 육아보육 시설의 자리는 344,300개로 약 만여 자리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를 모두 확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 3세 이하의 영아를 위한 시설도 현재 150,000여 자리가 부족하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은 연방국가이므로 각 주(州)마다 사정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의 빈자리는 동독지역이 서독지역보다 많다. 이러한 지역적 보육시설의 빈자리의 차이는 보육시설이 얼마나 있는가의 문제이기 보다는 일하는 부모가 어느 지역에 더 많은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독지역의 경우 동독지역보다 평균적으로 보육시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각 주(州)의 차이를 고려하여 부모들이 아이들의 보육시설이 충분한 주로 이주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주를 감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헤센주로부터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건설공사에 1700만 유로(약 255억)를 배정받은 상태이다. 헤센주는 이미 약 육천만 유로 정도를 보육시설의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확보해 둔 상태이다. 그러나 2013년 7월 1일 사회복지부의 보고

에 따르면, 헤센주는 36%만이 확충된 상태이다. 또한 이는 실제로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도 포함된 수치이다.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1세에서 3세 아동의 보육시설을 31%까지 확충하였으며, 70%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많은 부모들이 보육시설의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sup>8)</sup>

이러한 양적인 수의 문제와는 별개로 부모들은 탁아시설의 질적인 수준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탁아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영아와 유아를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교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래 독일의 탁아시설의 선생님들의 교육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부모들과 사회단체들은 3세 이하의 영아를 보육하기 위한 탁아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의 수정과 질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영아와 유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자질이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 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고려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시설의 이용비는 매달 평균 천 유로로 예상하고 있다.

## 2) 어린이 방(Kindertagesbetreuung)

독일에서 어린이 방은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보장법 제8편 제22조 이하 제26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시설 지원법은 주(州) 관할 사항이므로 각 주는 자체적으로 주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베를린의 경우에는 어린이시설지원법(Kindertagesförderungsgesetz : KitaFöG)<sup>9)</sup>을 제정하였다. 또한 각 주별로 어린이 방 이용을 위한 부모의 부담금이 매우 상이하다. 얼마만큼 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은 항상 논의의 중심에 있다. 독일의 경우 현재 공립의 탁아시설이 많지 않으므로, 연방 주에서 승인하여 가정집에서 3세 이하의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는 어린이 방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신의 자녀를 돌보면서 다른 자녀들도 같이 돌보는 형태의 어린이 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 방의 경우 정부에 등록된 교육적 자질이 있는 사람만이 정식으로 아이들을 맡아 보육할 수 있다.

어린이 방의 장점은 일반 어린이 탁아시설보다 시간적인 융통성이 있다는 점이다. 부모와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 사이에 시간적 합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찍 또는 늦게 아이를 맡기

8) Frantfurter Allgemeine Rhein-Main, Die Wartelisten bleiben lang, 2013.07.28.

9)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sen-familie/rechtsvorschriften/kitafoeg.pdf?start&ts=1320398444&file=kitafoeg.pdf>.

고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부터 어린이 방의 보모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교육학 자격증과 어린이를 위한 응급처치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성과 인격, 건강 면에서 모두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러한 공간에서 보육을 할 수 있다는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적합성에 대한 심사는 주(主)법이나 행정규칙에 의한다.

### 3) 유치원(Kindergarten)

일반적으로 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동을 교육하는 곳으로 우리의 유치원 개념과 다르지 않다. 다만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회비와 입학비의 격차가 심하며, 사립 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사립유치원의 회비의 경우 일반 국공립 유치원의 몇 배가 될 정도로 비싼 편이다. 공립유치원의 회비의 경우 주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하이델베르크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매년 약 1403유로가 든다. 보편적으로 영아와 유아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자리는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이들이 학교로 이동하는 경우에 생기는 게 보통이다.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 새로운 자리를 받기는 쉽지 않다.

### 4) 놀이·공부방(Betreuungsschule, Hort, Schulhort)<sup>10)</sup>

이러한 놀이·공부방의 경우 수업이 시작되기 전인 7시 30에서 8시 30과 방과 후 14시 30부터 15시까지 운영된다. 이러한 시설의 운영비는 구(군), 시, 주와 부모들에 의해서 충당되는데, 한 아이의 시설 이용비는 월 80유로 선이다. 이러한 놀이·공부방에는 그룹 활동이 가능한 방과 부엌이 구비되어 있다. 놀이·공부방 시설을 이용하는 연령은 대략 만 6세에서 10세로 주중에 수업전과 후에 5시간 정도 유치원 선생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일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sup>11)</sup>

## III. 결론

독일은 직접적으로 일하는 부모를 위한 영아와 유아의 보육과 탁아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2007년부터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새로운 탁아시설의 확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양적으로 탁아시설의 자리가 확보된다 할지라도 영아와 유아를 위탁받

10)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공부방으로 해석하였으나, 분명히 언급하면 학교 수업 전·후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맡기고 간식과 숙제 등을 봐 줄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11)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13년 2월 4일자 39면 내용에 실린 Wetterau의 Bad Vilbel의 사례소개.

아 교육하고 보육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3년 8월부터 새롭게 실시된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탁아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의 교육과 이러한 직업교육을 위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보육시설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보육시설의 상황에 대하여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여 적절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이러한 청구권(Rechtsanspruch auf Kitaplätze)에 의한 권리 구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은 존재하는 것인지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의 진행은 미미하나,<sup>12)</sup>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어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과연 실질적인 실익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곧 실질적인 소송이 급속히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에 따른 방안의 실효성 여부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적인 탁아시설의 확충 이외에도 일하는 부모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예를 들어,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과 병행되어 부부세금 감면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족세금 감면제도를 고려

해 볼 만하다. 총 수입의 최대 4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독일인으로서 위에서 말한 부부세금감면제도가 결혼한 부부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출산을 장려하고 영아와 육아의 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족부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가족세금 제도에 대하여 큰 호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는 향후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출산장려를 포함한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실상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출산율을 상승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부와 기업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가족부 장관은 기업의 이러한 가족지원 대책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기업측은 이러한 정부의 직접적 요구에 대하여 기업의 시장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하되, 직접적으로 어린이와 가족에게 부여해야 하는 기업적 혜택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는 입장이다. 일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직장에서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탁아시설의 운영 없이는 영아와 유아를 둔 부모의 짐을 덜어 주는 것이 금전적인

12) 독일 주와 지방자치 연합(Deutschen Städte- und Gemeindebundes)의 의장, Gerd Landsberg의 빌트지와 2013년 8월 30일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까지 독일 전 지역에 50개 이하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자녀지원금과 더불어 영아와 유아의 보육을 위한 보조비를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 이외에 탁아시설의 확충에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하는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노력은 장기적 시각에서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볼 수 있다.

**이 지 희**

(독일 슈파이어 대학교 박사과정)

### 참고문헌

유수연, "독일의 영유아 보육법제", 『최신외국법제정보』 2012년 제6호.

Frankfurter Allgemeine Rhein-Main, Die Wartelisten bleiben lang, 2013.07.28.